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안내

25°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 대상 세대 소유주에게 한국공항공사에서 보내드리는 안내서입니다. 냉방기 설치를 희망하실 경우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신 경우 접수여부 확인을(구비서류 미비 등) 하시기 바랍니다.

1. 설치대상

-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2023.1.1)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아파트 연립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입니다. 신청 시 **허가일자**와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개별 독립 세대(또는 가구)당 실외기 1대가 설치되며, 사전 조사 시 여러 대 설치를 목적으로 가족 간 의도적인 세대분리나 위장전입이 발견될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본 우편물은 **사업 대상세대**에 발송되지만, 우편물 발송 시 주소 및 배달 과정의 오류로 인한 오배송으로 확인될 경우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건축물**은 접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설치가 제외**되며, 설치 후 **건축물 철거가 진행될 경우** 한국공항공사로 **냉방시설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설치사항

- 설치모델 : 당해연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하는 가정용 냉방기(벽걸이, 스탠드, 2IN1)를 참고하여 용량별 제품리스트를 선정하고, 리스트 중 신청인이 선택(사전협의)한 모델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 용량산정 : 설치할 냉방기의 **냉방 용량(면적)은 건축물대장 상 전용면적(m²)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 주택전용면적이 18평(58.5m²)일 경우 냉방면적이 18평(58.5m²)이하 냉방기 설치
- 에너지소비 등급 : 당해연도 신제품(1등급)을 우선 설치합니다. 단, 제조사의 사정과 냉방기 용량에 따라 1등급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높은 등급 제품을 설치합니다.

주택냉방시설 신청문의 : 02)2660-2062~7, 02)2660-2456~9

3. 신청방법 및 설치 절차

※ 공동 소유 시 소유주 모두 서명

- 냉방시설 신청은 주택 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향후 설치 모델 선정 및 위치와 관련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설치에 대한 위임(신청서 뒷면)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소유주 미동의 시 신청 불가**)
 - 우편·방문 및 온라인 접수 :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소유주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다가구주택(신청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아파트·연립(건축물대장 전유부)
 - 설치 절차 : 신청 후 차기년도 사업대상에 반영될 경우(별도 안내) 냉방기 모델 및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2~3월) 진행(최종협의서 작성) 후 순차적으로 설치(5~7월)
 - 설치 전에 취소 가능하며, **추후 설치 희망 시 연기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 할 경우 다음연도 설치를 위해 접수순으로 대기하셔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당해연도 설치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예산 초과 시 다음연도 이월)
- ※ 냉방시설은 **국가예산**으로 설치되어 설치 후 반드시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내용을 숙지** 하셔야하며, 설치된 **냉방기의 양도·매매·이동은 불가**합니다.(전출 시 전입자에 냉방기 인계)

4. 작성방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건축물대장 참고사항

주거용도만 설치가능

전용면적 작성 (2쪽 중 제1쪽)

고유번호 147010300-3-09870001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번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43

전 유 부 분

구분	종별	구조	용도	면적(w)	소유자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43.92	홍길동	/	2005.12.09
			- 이의여백 -		23456-*****	강서구 하늘길 76	소유권이전

공 용 부 분

구분	종별	구조	용도	면적(w)	비고
주	지중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3.92	
부	지중	철근콘크리트조	중간기계실, 중앙공급실	0.73	
주	1층	철근콘크리트조	복도 및 계단	12.22	
부	1층	철근콘크리트조	관리사무소, 노안장, 실내체육관	0.19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양천구청장

※ 공제액이 있는 구분표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면에 공제액이 있음을 기재합니다.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97mm×210mm(복합지(80g/w))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세움터(www.eais.go.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를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주 신청

발행일: 2018년 10월 09일

담당자:

전화:

5. 신청기한

- 상시접수
- ★ 접수하시면 다음 연도 설치를 위해 접수순으로 대기하셔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접수순에 따라 설치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주택냉방시설 신청문의 : 02)2660-2062~7, 02)2660-2456~9

주택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기재사항						
설치대상 건물주소						
소유주명		소유주 연락처				
		기타 전화번호				
세대별 주거현황						
구분	성명	관계 (소유주, 임차인)	건축물대장 기준		연락처1	연락처2
			호수(~층~호)	전용면적(m²)		
작성 예시	홍길동	임차인	2층201호	103.2	010-1234-1234	
1						
2						
3						
4						

본인(소유주)은 안내문 및 하단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주택냉방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주

(인)

※ SH 및 LH 임대주택의 경우 직인 필수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 안내

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는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보유기간 : 10년)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유의사항]

-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전입세대열람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다가구주택의 경우)
- 설치대상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23.1.1)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 아파트, 연립 등이며, 주택용도가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물탱크실, 공란 등)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주택 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유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주소, 세대별 주거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주가 작성이 어렵거나 향후 설치와 관련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설치에 대한 위임(뒷면 위임장 작성)을 받아 신청할 수 있음. 소유주 미동의 시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개별세대(또는 가구) 당 실외기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설치할 냉방기(벽걸이, 스탠드, 2IN1)는 제조사 냉방용량(면적)이 전용면적 이하의 제품에 한하며, 한국공항공사와 최종 협의 하여 주민께서 결정한 사항(제조회사, 용량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전기료와 부대(소모품 등)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하절기(6~9월)기간 동안의 발생하는 전기료(최대 연 20만원, 전입신고 기준 일할계산)는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설치 시 전기공급 용량 증설 등의 시설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냉방시설 설치 후 시운전 등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주택냉방시설 관리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국가예산으로 설치된 본 시설의 양도·매매·외부 이동 등은 불가합니다.(전출 시 반드시 전입자에게 냉방기 인계)
- 설치 전에 취소(확인서 작성) 가능하며, 추후 설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보류·연기 불가)
-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확정 또는 설치 불가능한 사유 발생(ex 실외기실 협소, 시공기간 이후 설치희망 등) 등으로 당해연 도 사업기간 중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취소확인서 작성 없이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시접수 가능하나, 접수하시면 다음 연도 설치를 위해 접수순으로 대기하셔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접수순에 따라 설치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시설단 환경관리부(우편번호 : 07505)

☎ 02)2660-2062~7, 02)2660-2456~9

※ 위임장은 소유주께서 모델선정, 설치위치 관련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위임자(소유주)		피위임자(위임 받는 자)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내용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소 : _____건축물에 지원되는 냉방시설 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 * 모델 선정 및 설치위치 협의 등 설치에 대한 모든 사항		
본인(위임자)은 위임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하여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위임자(소유주) : _____(서명 또는 날인)			
안내사항	☐ 위임시 제출서류 - 위임자가 서명(또는 날인)한 위임장 - 신분증 사본(위임자 및 피위임자)※주민번호 삭제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LH, SH 제외) ☐ 본 위임의 범위는 설치에 대한 사항에 국한되며, 설치 이후 냉방시설의 관리 의무는 위임여부와 관계없이 <u>소유주</u>에게 있습니다.		